

의안번호	2203765
의 퇴 인	백종헌의원
회 답 일	2024.10.10.
추 계 번호	24C367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31억 6,400만원, 2030년 33억 1,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57억 2,500만원(연평균 31억 4,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운영(안 제23조의3 신설)	3,164	3,018	3,116	3,215	3,312	15,725	3,144

주: 본 추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인력 규모 및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3 신설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예측센터”)를 설립하거나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예측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제3항) - 1. 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2. 기후·환경 요인과 위해요소간의 상관관계 등 조사·연구 - 3. 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 - 4. 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예보 지원 - 5. 위해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 6. 위해예측에 관한 국제협력 - 7. 그 밖에 위해예측관련 정보수집·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3조의3 신설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지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추계 · 향후 식품위해예측센터가 수행할 업무와 정부가 출연 할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우나, 본 추계에 서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 용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임차료 를 정부가 전액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식품위해예측센터 인건비 추계 시 명목임금상승률, 자산취득비 추계 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활용
 - 사무실 임차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공간을 활용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설립·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전액을 정부가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본 추계에서는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운영은 대통령 국정과제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2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25년 예산안에 위해요소 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비 2억 4,000만원이 포함¹⁾

□ (인건비)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총 34명(전문직 19명, 사무·기술직 15명)으로 예상되며, 본 추계에서는 2026년 첫 해에 34명을 모두 신규 배치하되, 해당 인력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식품 위해요소 데이터 및 정보 수집·분석, 기후·환경적 요인과 위해요소 간 상관관계 등 조사·연구, 위해요소 예측모델 개발 및 위해 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직 19명, 사무·기술직 15명으로 총 34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함
- 개정안에 따른 식품위해예측센터 인력의 직급체계와 직급별 보수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안전정보원의 사례를 준용

[표 2] 식품위해예측센터 인력 구성(안)

(단위: 명, 천원)

직급		인원 수	1인당 인건비
전문직	수석연구위원	3	70,801
	연구위원	4	54,896
	부연구위원	5	49,477
	연구원	7	43,498
사무·기술직	관리위원	1	63,466
	수석관리원	2	52,184
	책임관리(기술)원	8	46,486
	관리(기술)원	4	41,446
합 계		34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해예측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각각 2023년 ‘위해예측 정보활용 및 안전관리 지원 체계마련을 위한 센터 설립비용 분석 등 연구’, 2024년 ‘예측대상 식품 위해요소 발굴·선정 연구’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각 연구용역 당 3,000만원을 지출함

- 추계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직급별 1인당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표 3]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인건비(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직급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전문직	수석연구위원	234	241	249	257	265	1,246	249
	연구위원	241	249	257	265	273	1,285	257
	부연구위원	272	281	290	299	308	1,450	290
	연구원	335	346	357	368	379	1,785	357
사무·기술직	관리위원	70	72	74	77	79	372	74
	수석관리원	115	118	122	126	130	511	102
	책임관리(기술)원	409	422	436	450	464	2,181	436
	관리(기술)원	182	188	194	200	206	970	194
합 계		1,858	1,917	1,979	2,042	2,104	9,800	1,959

주: 향후 실제 인력 구성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제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사업비) 인건비에 유사사례인 식품안전정보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중(14.2%)과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중(43.2%)을 곱하여 산정²⁾

[표 4]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및 사업비(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경비	264	273	282	291	299	1,409	282
사업비	802	828	855	882	909	4,276	8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개정안 시행 첫 해인 2026년에만 발생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2020년 기준 589.2만원) 추정치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2)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운영” 사업 예산 기준

[표 5]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자산취득비	240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1억 6,400만원, 2030년 33억 1,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57억 2,500만원(연평균 31억 4,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인건비	1,858	1,917	1,979	2,042	2,104	9,800	1,959
기본경비	264	273	282	291	299	1,409	282
사업비	802	828	855	882	909	4,276	855
자산취득비	240	-	-	-	-	240	48
합 계	3,164	3,018	3,116	3,215	3,312	15,725	3,144

주: 본 추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인력 규모 및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였으며, 향후 실제 인력 규모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장우윤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4741	jangwy93@assembly.go.kr